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26

제출년월일: 2019년 5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 7. 1.자로 시행(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 개정

나. 개정내용

연번	현 행	개정(안)	비고
1	“장애등급”	“장애 정도”	
2	“장애 1 ~ 3급”	“심한 장애”	
3	“장애 4 ~ 6급”	“심하지 않은 장애”	
4	“장애 1 ~ 6급”	“등록장애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부칙

나. 예산조치: 예산 관련 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9. 4.24.~2019. 5.14.):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

5)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일괄개정 자치법규 목록

▢ 조례안: 7건

연번	자 치 법 규 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정책과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복지과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정책과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차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1~3급”을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4~6급”을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1~3급”을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4~6급”을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는”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한다.

[별표]의 순위1의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이 1~2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순위2의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이 3~6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며, 순위3의 장애인란 중 “장애등급이 1~6급” 을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중 별지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장애유형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다목 중 “1·2·3급”을 “심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4·5·6급”을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란 제9호가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를 “등록장애인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 정도----------. ②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 삭 제 4.·5. (생 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6급 장애인 2. ~ 6. (생 략)	제18조의2(수강료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2. ---------- 심한 ------ 4.·5. (현행과 같음) ② ----------. 1. ---------- 심하지 않은 ---------- 2. ~ 6.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2. ~ 5. (생 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6급 장애인 2. ~ 5. (생 략) ④ (생 략)	제14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심한 -------- 2. ~ 5. (현행과 같음) ③ ----------. 1. ---------- 심하지 않은 ---------- 2.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 ----------. ----------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현 행

순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미과세대상자	65세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중 과세대상자 (소액과세대상자 우선)		
4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 정 안

순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등록장애인으로 미과세대상자	65세이상으로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중 과세대상자 (소액과세대상자 우선)		
4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 등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이 동일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별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신청서

현 행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신청서
(□ 매점 , □ 자동판매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 (장애인의 경우)		
	생활정도 (해당란에 ∨ 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개 정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신청서
(□ 매점 , □ 자동판매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구분 (해당란에 ∨ 표시)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 정도 (장애인의 경우)		
	생활정도 (해당란에 ∨ 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
<td>
<table>
<tr><th colspan="7">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th></tr>
<tr><td rowspan="5">이용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남・여</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장애유형 및 등급</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대상유형</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이동기기 종류</td><td colspan="5">수리요구사항</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수리 의뢰 업체</td><td colspan="5"></td></tr>
</table>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td>
<td>
<table>
<tr><th colspan="7">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th></tr>
<tr><td rowspan="5">이용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남・여</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대상유형</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지원내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이동기기 종류</td><td colspan="5">수리요구사항</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수리 의뢰 업체</td><td colspan="5"></td></tr>
</table>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td>
</tr>
</table>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나. (생 략) 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2·3급 장애인 : 전액 라.「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4·5·6급 장애인 : 50 마.·바. (생 략)	제23조의2(사용료의 감면)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심한 ---------- 라.---------- 심하지 않은 ---------- 마.·바.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현 행	개 정 안
9. (생략)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4.1.15)	9. (현행과 같음) 가. ----------등록장애인으로서 ----------.

강서구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성 명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담당 : 행정7급 안소현)
연락처	02-2600-6433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7.1.字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장애 1~3급”을 “심한 장애”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 1~6급”을 “등록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19 - 13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통보(조치)일	2019. 5. 9.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일괄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17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안소현	전화번호	02-2600-643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5월 10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05월 13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5월 13일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18.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